

# 검 토 보 고 서

1996. 10. 29

내 무 위 원 회

## 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1996. 10. 22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경영관리실장)
- 회부일자 : 1996. 10. 22
- 검토기간 : 1996. 10. 25 ~ 10. 26(2일간)

## 2. 제안이유

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.

## 3. 관련근거

지방재정법 제118조의3(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, '94. 12. 22 신설조항)

### ※ 참고사항

- 1)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기본지침 및 조례준칙통보(시예산 13300- '383, '96. 6. 27 내무부 세정 13300-472호의 이첩)
- 2) 입법예고 :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(안)  
(구공고 제1996-168호)
- 3)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(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)  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

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,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,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'94. 12. 22]

### 주요골자

- 재정운영상황은 매년2회(상·하반기)각각 주민에게 공개함(안 제2조)
-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대상 규정(안 제3조)
-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구 공보에 게재(안 제4조)
- 구청장의 궐위, 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. (안 제6조)

### 검토의견(전문위원 황정근)

-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(안)은 그간 중앙정부가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예산편성지침, 중기지방재정계획, 지방재정 투·융자 심사제도, 지방채발행승인 등 각종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,
-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, 지방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회공개(안 제2조)로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,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등을,
-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및 세입·세출 집행상황 등을 공개(안 제3조)대상으로 하며,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의 궐위, 임기만료, 기타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

-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
- 또한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는 민주주의 구현의 기본적 장치인 견제와 균형(Check & Balance)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와 대주민관계의 밀착행정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그리고 재정운영상황의 공개가 열린사회(開放社會, Open Society)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, 주민과 행정의 일체감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금번에 제출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(안)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